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46호

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고시

2021. 6. 8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(안 제2조)

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

나.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 반영(안 제4조)

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1-199호, 2021.5.10.(2021.5.10.~5.31.)

2)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: 제2020-0566호(2020.2.14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46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,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제30조, 제32조, 제34조에 따른 「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-16호, 2020.3.1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6월 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”를 “보세구역 등에의 반입전까지”로, “보세구역 등에 입고한 사실을 확인 후”를 “반입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1항의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.

부 칙

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.